

78년도 제 1 차 육계분과 회원회의



— 1월24일,
委員長인 박병희씨

지난 1월24일 오후1시 본 회 회의실에서는 전국의 지부 및 분회, 계우회, 단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8년도 제 1 회 육계분과회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 오세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가 생산단체로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박영인 지부장(미국사로 곡물협회 한국지부)의 유통개선에 관한 강의를 있었는데 박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자들의 계약생산, 공동구입, 공동판매방식」을 통한 단결을 주장했다.

회의는 육계분과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육계업의 제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병희씨(본회부회장, 관교단지장)는 인사말을 통해 양계인의 단결이 모든 문제해결의 원동력

이라고 주장하면서 단합을 호소했다. 회의중 토의된 사항은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간의 시세 및 정보교환문제, 불량추가 유통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생산자 등록문제 등 광범위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1월31일(화) 제 2 회 육계분과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문세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했다

이날 육계분과위원으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박 병희(본회부회장,

관교단지장)

부위원장 : 이 천교(동부육계

회 회장)

이 철우(입북단지장)

이 기범(본회이사

양 동환(본회이사,

포천분회장)

이 수인(에번농장

대표)

위원 : 이 문기(충북 송학양계

장대표)

황 은현(전남지부)

강 병호(경남지부)

박 인수(전북지부)

최 태식(연천 분회장)

원 대진(안양분회)
한 운도(새한육계회 회장)
이 태규(인천분회장)
손 기정(양평계우회장)
최 중록(일산계우회장)
장 민기(버들농원대표)
문 석록(협동축산대표)

제 1 회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 신속한 시세정보 파악 방안강구 —

지난 1월31일 오후1시 본 회 회의실에서 제 1 회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분과위원들이 각각이 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시행방향을 작성,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이를 당국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량추 유통문제에 관하여 차기 이사회와 부회분과 위원회에 건의하고 공동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속한 시세정보교환을 하기위해 각 위원이 소속된 지부, 분회, 계우회, 단지에서는 매일 오전중에 협회에 이를 통보하고 협회에서는 전화와 엽서를 통해 다시 연락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여 현재 실시중에 있다

부화업 경영자 연수회 성료

— 친목도모 및 정보교
환에 큰 성과 거두어 —

본회는 지난 1월27일 ~ 28일, 양일간에 실시된 부화업 경영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78년 제 1 회 부화업 경영자 연수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1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회 회의실에서 “부화유통 향상방안”과 “부화경영개선”에 대한 강의가 건국대학 축산대학 교수이며, 본회 회장으로 제신 오 세정 씨의 강의가 있은다음 1시에 중식을 마친후 안양소재 가축위생연구소로 장소를 옮겨 3시부터 “중계의 사양관리 및 인공수정 요령”에 대하여 현재 서울대학 농과대학의 오봉국박사의 강의 및 실습



이 있은다음 석식을 겸하여 진지한 정보교환이 있은후 여관에 투숙하여 각자 친목도모하는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28일 강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났는데, 강사로서는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으로 있는 박근식씨로부터 “부화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박과장은 27일에 연수자 몇 명한테 채취한 (손, 옷깃, 가방 등) 세균의 번식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부화위생의 중요성을 주지 시키는 강의를 하였다. 아울러 석식 시간을 이용 부화 분과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참석한 부화 경영자 연수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순)

안경희(경원부화장), 박무로(협동부화장), 정석택(명지부화장), 손영곤(성심부화장), 차상진(봉명부화장), 강두원(청일부화장), 김해수(성신부화장), 정하웅(원양부화

장), 신주영(고골부화장), 신흥종(고창양계센터), 서병석(유신부화장), 배성황(삼화농원), 황차성(영육부화장), 윤재구(제일부화장), 김영권(새마을부화장), 구 온(서림부화장), 김홍대(남양부화장), 이경화(능곡부화장), 김홍열(한홍목장), 홍종철(미량부화장), 김무길(조산부화장), 이재식(계유부화장), 정상태(홍성부화장), 조 황(서산목장), 권오청(신광농장), 이해용(하양부화장), 정호용(유완농원), 유수기(부로부화장), 윤홍섭(서라농장), 문창식(중앙중금부화장), 김나구(산지농원), 장만순(태호목장), 유현진(판교부화장), 현근주(현촌목장), 최한옥(삼일부화장), 안명수(대성농장)

전라북도 양계강 습회 개최예정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전북지역의 한센씨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양계가 들이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강사는 오세정(본협회 회장), 박근식(가축 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장소는 미정.

제 1 회 부화기술자 연수회 성료

— 부화장 위생관리에 큰 관심보여 —

지난 2월 3~4 일 양일간에 걸쳐서 본회 회의실및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78년 제 1 회 부화기술자 연수회가 연수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론과 시범을 겸비한 이번 연수회는 연수자 모두에게서 효율성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연수회비를 더 받더라도 다음에는 합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년에 2~3회 더 늘리고 모범부화장을 방문하는 방법을 취해 달라는 요망사항도 있었다

이번 연수회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하여준 것은 연수회가 끝난 다음에 조를 나눠서 진지한 분담토론이 있었

는데, 조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 : 부화기 종류별 취급관리상 장단점(권우영, 강태의, 진홍태, 최춘식)

2 조 : 부화환경조절과 부화율 향상방안(윤태섭, 조용석, 이법철, 한상익)

3 조 : 종란의 취급관리와 저장환경조건이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정경택, 이희식, 한재권, 김상덕)

4 조 : 인공수정 요령에 따른 수정을 향상 방안(윤성기, 조봉완, 손복기, 양성구)

5 조 : 부화기 소독 방법에 따른 효과검토(유제복, 김주섭, 허서규, 최윤식)

6 조 : 조생주 판매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신원, 조은기, 박홍규, 안규원)

7 조 : 부화중 생산비및 경영비 절감 방안.(조호범, 성국환, 박근우, 지덕성)

8 조 : 부화장 시설의 효과

적인 배치방안(이종빈, 안만복, 이순호, 정영재)

또한 연수자들은 제1회 연수회를 기념하는 뜻에서 서로 각지역에 떨어져 있더라도 우의 및 정보 교환을 하자는 뜻에서 협회에서 주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인 바 다음과 같이 연락장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경희(경원부화장)
서울도봉구상계동1138-7
최 윤식(상록부화장)
서울도봉구상계1동1098-2
이 희식(고골부화장)
경기고양군벽제면관산리 629
조 봉완(삼일부화장)
경기고양군원당문봉리
양 성구(다나가축약품)
경기양주장흥면일령리 401
손 복기(다나가축약품)
경기양주장흥면일령리 401
김 상덕(유원부화장)
경기양주화도면장현리산22-8
이 중빈(구리부화장)
경기양주구리읍인창리 559
권 우영(신성부화기)
경기인천남구청학동26
진 홍태(서림부화장)
경기김포검단면마전리 160-1
안 만복(동순부화장)
경기수원시오목천동 522



강 신원(소신중계원)
 경기부천시괴안동 115
 정 영채(육림부화장)
 강원춘천운교동79
 이 순호(육림부화장)
 강원춘천운교동79
 최 춘식(일신부화장)
 강원홍천군홍천읍연봉리산 8
 정 경택(명지부화장)
 충북증원군주덕면창전리97-7
 조 용석(원암부화장)
 충남충주시용두동 370-8
 윤 태섭(서라부화장)
 충북논산군연무읍마산3동90
 이 범철(서라부화장)
 충남논산군연무읍마산 3 동90
 유 제복(유림농장)
 충남천원군성거면석교리70-1
 지 덕성(한얼농산)
 충남아산군온양읍모종리` 455
 강 태의(삼화농원)
 충남홍성군광천읍신진리 435
 한 상익(고창양계)
 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 231
 정 비호(고창양계)
 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 231
 조 은기(익산농장)
 전북익산군왕궁면구덕리산28
 박 홍규(익산농장)
 전북익산군왕궁면구덕리산28
 박 근우(지산부화장)
 전남광주시서구양산동 209-8
 성 국환(지산부화장)

전남광주시서구양산동 209-8
 조 호범(칠성부화장)
 경북대구북구칠성동 2 가 412
 김 주섭(봉산농장)
 경북영주영주읍휴천리642-296
 허 서규(봉산농장)
 경북영주영주읍휴천리642-296
 윤 성기(?)
 경기광주동부면덕풍리
 안 규원(제일부화장)
 경기광주동부면덕풍리

78년도 제 1 회 세 무강습회 개최

2 월27일 (월) 본회 회 의실에서—

축산업납세 2 차년도에 들 어서면서 아직도 세무에 밝 지 못하므로 장부 비치와 기 장처리, 세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 양계업제의 실정을 감안, 본회에서는 오 랫동안 농장에서 세무회제를 다룬 바 있는 송재만씨(소신 중계원 경리과장)를 강사로 하는 78년도 제 1 회세무강습 회가 2월27일 본회 회의실에 서 오세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개최되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장부의 기장방법, 증빙서류처리, 세 무보고요령등 일반 양축가가

알고 지키며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므로써 절세를 하게되 는 요령을 이론과 실제를 병 행하여 알기 쉽게 미리 배부 된 교재에 의거 강의하였다. 강습회 개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강의 내용

- 가) 부가세실시에 따른 양축가의 이행사항
- 나) 필수세무 사항
- 다) 장부비치, 기장, 세 무보고요령
- 라) 질의응답

제 2 회 부화경영 자 및 기술자 연수 회 성료

—부산지부서 13, 14양 일간—

지난 2월 13일과 14일 양 일간에 걸쳐 부산지역 에서 제 2 차 부화경영자 및 기술 자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앞서 본회(서울)에서 실시 했던 제 1 회때와 같이 50여 명의 연수생들이 진지한 자 세로 연수회에 임하여서 보 는 이로 하여금 부화 업제의

밝은 일년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이날 연수회는 김 중경(본회 부산경남 지부장) 씨와 허태수(본회 부산경남지부 총무) 씨, 손종연(본회 부산경남지부 부회분과위원장) 씨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을 이루었으며 박 봉조(부산시가축보건소장) 씨가 연수회교재를 제공하였다.

이 연수회의 강사는 오세정, 오봉국, 박근식씨로 그 내용을 본회에서 실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78년 제 1 차

이사회 개최

— 회원자격 및 구분, 대의원 선출규정확정 —

지난 1월20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는 78년 제1차 이사회가 이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신가입회원 174명에 대한 가입승인과 개정정관 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 및 구분에 관한 규정제정 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 자격 및 구분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정관 제 5 조에 의한 회원 자격 및 구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일반회원에 있어 (1) 가금업을 경영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 한자로서 가금 1,000 수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생추 자용 감별사라 함은 본회가 발급한 갑종 및 고등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제 3 조 단체회원에 있어 (1) 법인체 및 조합이라 함은 가금업을 경영하는 법인체 및 조합을 말한다. (2) 기업양계 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종계 (P L 및 G P. S)를 소유하는 농장

나, 산란 (실용계)30,000 수 이상을 소유하는 농장

다, 육용 (실용계)50,000 수 이상을 소유하는 농장

(3)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회원 자격을 원할 때에는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도 있다

제 4 조 특별회원에 있어 가금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에서 가금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조교수 이상인 학자

나, 국립립 기관에서 가금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연구관

다, 가금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자연인으로서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5 조 본 규정은 1977. 12. 12. 회원 정기총회에서 변경(개정)의결한 정관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의원 선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 (1) 항에 의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대의원의 정수)

대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대의원은 지역별로 회원 10명당 1명으로 한다. 여기서 지역별이라 함은 각 시, 도별과 도 지부가 없는 지역의 분회 및 본회가 관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대의원 정수는 12월 31일 현재 지역별 재적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3) 12월 31일 이후에 새로 가입된 지역별 회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원이 되었을 때에는 대의원의 정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대의원 정수를 결정 할시 재적 회원수로 본다.
- 4) 12월 31일 이후에 회원이 탈퇴 혹은 제명 회원의 10인 이상 발생 하였을 때에 감소된 회원수에 구애됨이 없이 12월 31일 현

재 확정된 대의원의 정수는 변동 시키지 아니한다.

- 5) 본회 임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본회 분과위원은 자동 대의원이 되며 지역별 대의원 선출시 다시 중복되어 선출되어도 가하다.
- 6) 본회 임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본회 분과위원 및 지역별 대의원이 동일인인 경우 이를 대의원 1인으로 본다.

제 4 조 (선출관리)

- 1) 회장은 12월 31일 현재 지역별 재적 회원수를 고정 시킨다.
- 2) 회장은 대의원의 정수와 자동 대의원의 명단을 주간공문에게 재하여 전회원에게 공표 한다.
- 3) 회장은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주간공문에 게재하여 전회원에게 공표 한다.

제 5 조 (대의원의 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기는 정관 제 16조

에 의한 임원의 임기와 같다

- 3) 대의원은 임기만료 시라도 자기 지역별 대의원이 확정 될때까지 자격을 가진다.

제 6 조 (선출기일)

- 1) 대의원의 선출은 지역별로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내에 선출한다.
-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출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때에 전부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하여 선출 기일을 연기 할수 있다.

제 7 조 (선출 방법)

대의원 선출은 다음에 계기하는 각호의 1 을 택하여 선출한다.

- 1) 지역별로 10인이 대의원 1 인을 서면 천거한다. 이때에 회원 1 인은 대의원 2 인 이상을 천거하지 못한다.
- 2) 지별역 회원 총회를 소집하여 구두 호천 혹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3) 도지부 및 분회에 소

속되지 않은 회원의
대의원 선출은 회장이
이를 관장하여 전
항 (1) 혹은 (2) 의 방
법중 택일하여 선출
한다.

제 8 조 (선출확인 및 보고)

- 1) 도 지부장 및 분회장은 당해지역의 대의원 선출을 관리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장이에게 보고한다.
- 2) 도 지부 및 분회에 속속되지 않은 회원의 대의원 선출관리 및 확인은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 9 조 (대의원 등록)

선출된 대의원은 회장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다
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등록하
지 않은 자는 대의원 피
선을 포기한 것으로 인
정한다.

- 1) 대의원 승락서 1 통
- 2) 주민등록 등본 1 통
- 3) 이 력 서 1 통
- 4) 신원증명서 1 통
- 5) 명함판 사진 1 매

제 10 조 (이사회 결정 사항)

- 1) 대의원선출과정에서

부정행위등 대의원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조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
다.

- 2) 선출된 대의원은 이
사회의 확인을 받는
다.

제 11 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적
으로 대의원 자격을 상
실한다.

- 1) 정관 제 10조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 2) 전항의 자격 상실로
인한 대의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 3) 전항의 대의원 자격
상실은 이사회에서 이
를 확인한다.

제 12 조 (서류보존 및 양식 제 정)

- 1) 선출 업무에 관한 모
든 서류를 이를 본회
에서 보존한다.
- 2) 대의원 선출에 필요
한 양식은 별도로 회

장이 이를 제정 한다.

제 13 조 (경과 조치)

- 1) 1978년도 대의원 선
출 기일은 농수산부
장관이 본회정관을 인
준 한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2) 1978년도에 선출될 대
의원의 임기는 동년
12월31일까지 한다.
- 3) 이 규정은 농수산부
장관이 본회 정관을
인준한 날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난가대책협의회 개최

— 생산자들의 계란 비축축구 —

지난 2월15일 오후 1시
본회 회의실에서는 최근 난
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최 창해 채란분과위원장의주
도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
석한 생산자는 안 태식(한국
계우회장), 승병선(본회 채
란분과위원, 대지농장대표),
이무현(본회 채란분과위원,
천호계우회장) 심준식(산곡
농장대표, 천호계우회 대표)
최상천(본회 채란분과위원,

승원농장대표) 씨로서 모두 진지하게 난가에 관한 하락요인과 대책을 협의했다.

요즘 계란시세 하락현상은 계란상인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대량비축하였다가 가격이 호조를 보이는 3월에 출하 하므로서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에서 가격하락을 조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정물량도 별로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가격하락의 요인은 없다고 분석하고 생산자들은 계란을 비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의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생산자의 단합이 우선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을 합의 하였다.

종계업등록및 부화업허가를 속히 받으십시오!!

1.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축산법에 의거하여 이미 등록 및 허가를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여전히 미비되어 아직도 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육하시는 종계가운데 아직 미등록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속히 등록 하시어 정확한 사육관리를 도모합시다.

3. 불량추(일반사육자가 지칭하는 잡종과 미등록된 종계에서 생산되는 병아리) 생산을 스스로 금하여 업체발전에 기여합시다. 이것이 곧 새마음 정신입니다.

4. 회원께서는 인근(가까운 곳)에 미등록된 종계장이나 혹은 허가없는 부화장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될수록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성을 기하여 보고 바랍니다.

5. 본회는 해당 각시, 도에 진언하여 등록과 허가를 받도록 의뢰코저 합니다. 이는 우리 양계인 모두가 다 같이 정당하고 명량한 길을 손잡고 나아가기 위함이며 결코 남을 해치고저 하는것이아닙니다.

제1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실시 예정

본 협회에서는 제1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을 오는 4

월 1일부터 실시코저 각 종계장으로 부터의 출품신청을 받고 있다.

1. 검정기간 : 1978. 4. 1~1979. 8. 13 (500일간)

2. 검정장소 : 본회 검정소 (김포소재)

3. 검정수수 : 차기 검정회에서 결정

4. 검정방법 : "

5. 출품종란수 : 1구당 1,200개

6. 출품료 : 1구당 10만원

7. 출품의뢰서마감 : 1978. 3. 2.

8. 접수처 : 본회 (서울 중구 양동 44-28)

9. 종란수집기간 : 78. 3. 3 ~ 78. 3. 8

10. 부화기간 : 78. 3. 9 ~ 3. 31

11. 기타자세한 사항은 본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571)

農水産部에 外國 鷄 도입건의

본 협회에서는 업계의 여론론을 집약하여 지난 2월20일부로 농수산부 당국에 외국계 도입을 허용해 줄것을 건의 하였다.